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1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11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종전의 「도시공원법」에 규정되었던 도시공원에 대한 사항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법명이 변경되어 개정(2005.3.31) 및 시행(2005.10.1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가. 종전의 「도시공원법」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법명을 정비하여 규정함.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0조, 제20조).
- 나. 조례의 관련 조항이 종전의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으로 변경되어 규정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12조).
- 다. 도시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 연습사용료를 현행 1코트(면) 기준에서 1인당(명)으로 조정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(안 별표 2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9조, 제21조, 제25조, 제40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0조, 제31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6. 10. 27 ~ 2006. 11. 16 (20일간)

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공원법” 을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법 제2조제1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 하고, 동조제2호 중 “법 제2조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5조 및 제6조”를 “법 제19조 및 제21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”으로 하며, 동조제2항 중 “법 제6조제2항”을 “법 제2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0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법 시행령 제11조”를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25조”로 한다.

“별표 2”의 제2호 ‘연습사용료’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 및 사용신청한 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소관 실과		녹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녹지과장 이 세 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공원기획담당 박 혁 택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 훈 택 (행정 2419)

[별표 2]

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(제11조 관련)

2. 연습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分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개 인	단 체	
인조잔디 운동장	1인 2시간	1,200	600	
실내 배드민턴장 (시민공원)	1인당(평일)	1,000	7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용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습사용시 1회 입장 사용시간은 오전, 오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 - 하절기(3월~10월) 오전(06:00~13:00), 오후(14:00~22:00) - 동절기(11월~2월) 오전(06:00~13:00), 오후(14:00~21:00)
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물안전진단의 날 지정 운영 (매월 둘째·넷째주 월요일)
실내 배드민턴장 (와동제2공원)	1인당(평일)	1,000	700	
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	
인라인스케이트장 (호수공원)	1회(어른)	1,200	900	
	1회 (청소년및 어린이)	500	300	
인라인 하키장 (호수공원)	1인 2시간(주간)	1,200	600	
	1인 2시간(야간)	2,500	1,200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」-----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
1. “공원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 2. “공원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.	1. ----- 법 제2조제3호----- 2. ----- 법 제2조제4호-----
제4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 ~ ③(생략)	제4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) ①법 제19조 및 제21조-----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)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 및 공원시설(이하 “공원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원등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젠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	제5조(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) ①법 제21조제1항----- ②법 제20조제1항---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(안)			
구분	기준	사용료		비 고	사용료		비 고
		개인	단체		개인	단체	
실내 배드민턴장 (시민공원)	1면당 (평일)	1,000	500	〈신설〉	1인당 (평일)	1,000	700
	1면당 (공휴일)	2,000	2,000				
실내 배드민턴장 (와동제2 공원)	1면당 (평일)	1,200	1,200	〈신설〉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
	1면당 (공휴일)	2,500	2,500				
실내 배드민턴장 (와동제2 공원)	1인당 (평일)	1,000	700	○ 사용시간 - 연습사용시 1회 입장 사용시간은 오전, 오후로 구분 하여 운영한다. - 하절기 (3월~10월): 오전: (06:00~13:00), 오후 (14:00~22:00) - 동절기 (11월~2월): 오전 (06:00~13:00), 오후 (14:00~21:00)	1인당 (평일)	1,000	700
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				
실내 배드민턴장 (와동제2 공원)	1인당 (평일)	1,000	700	○ 시설물안전진단 의 날 지정 운영 (매월 둘째·넷째 주 월요일)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
	1인당 (토/일/ 공휴일)	1,500	1,200				

[별표2]

2.연습사용료(제11조 관련)

(단위:원)

[별표2]

2.연습사용료(제11조 관련)

(단위:원)